호주	1 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정기)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새로운 원산지 표시법 발효

○ 호주의 소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새로운 원산지 표시법(CoOL)이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원산지국가 식품 표시 정보 표준 2018은 2018년 7월 1일에 시작되며, 식품의 제조, 포장, 원료 재배지 등의 여러 정보를 텍스트 혹은 그래픽 형태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동 법은 2018년 6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포장 혹은 생산된 제품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제조된 식품은 새 규정에 따른 라벨이 없어도 계속 판매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우선 식품의 경우 법에 규정된 그래픽 및 심볼을 사용해야 하며, 비우선 식품의 경우 그래픽 형태가 아닌 텍스트 형태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음. 식품은 다음의 비우선 식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 우선 식품에 해당됨

- 조미료
- 제과
- 비스킷과 스낵 식품
- 청량음료 및 스포츠 음료
- 알코올 음료
- 차와 커피
- 생수

2) 호주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포장된 경우 캥거루 마크를 붙일 수 없음. 수입 식품은 호주에서 재배,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되며, 호주에서 재배, 제조, 생산, 포장된 식품에만 캥거루 심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호주원산지 제품 표시 라벨

▲ 호주원산지 제품 표시 라벨 예시

- 수입식품의 경우 캥거루 심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박스상자 안에 텍스트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 비우선 식품의 경우는 위 그래픽에 나오는 상자가 아닌 텍스트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음
- 이번 라벨 변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나라의 식품원료가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 식품수입업자 혹은 제조업자는 식품이 포장된 국가와 식품의 기원이 여러 가지이거나 수입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야 함.
- 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음

▲ 포장된 국가와 원재료 기원 표기 예시

- 수입 식품이 하나의 해외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 'made in' 표기가 아닌 'packed in (포장된)' 표기를 하여야 함
-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호주산 재료를 함유한 제품을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 호주 식품성분의 함량을 막대 차트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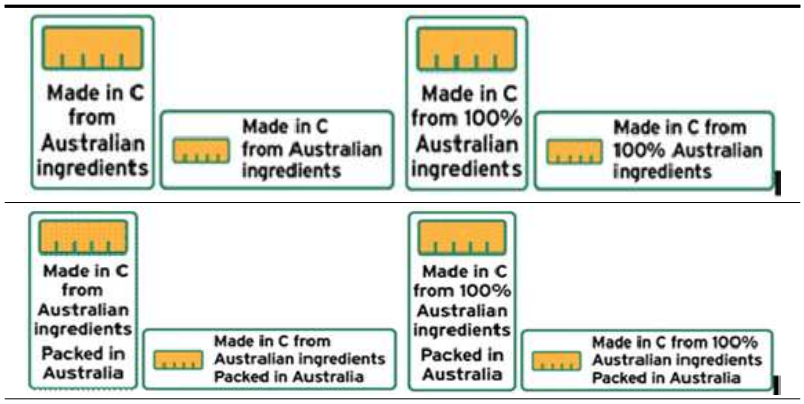

▲ 포장된 국가와 원재료 기원 표기 예시

- 라벨의 부착과 관련하여 식품라벨은 포장지의 한 면에만 부착되어야 하며 분리하여 표기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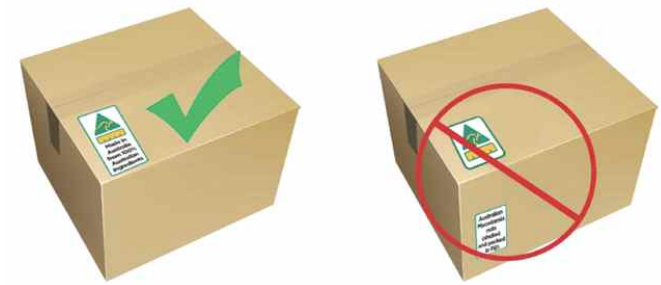

▲ 라벨 부착 분리 불가

2. 2017년 12월 호주 수입규정 변경 요약

○ 호주의 생물 의약 안전법(Biosecurity Act 2015)의 제 174 (1) 항이 개정되어, 2017년 12월 21일 부터 특정상품의 수입 조건이 변경됨을 호주 농림수산부가 고시하였음

○ 이번 개정은 특정 상품에 대한 생물 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수단을 인정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입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변경 사항의 대부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지만, 생화와 단풍은 수입업자가 새로운 대체 조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3월 1일까지 적용이 연기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되는 수입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수입 허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품목

- 그동안 수입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호주와 호주 영토로 반입할 수 있었던 아래 상품들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가 폐지되었음. 다만,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이 호주의 생물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별도로 규정된 수입 대체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허가제가 폐지된 제품은 아래와 같음

· 모든 감염되지 않은 식물 표본

·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노퍽 섬에 있는 고양이와 개

· 뉴질랜드 토끼

· 자연 또는 양식 진주

· 화장품용 생물 재료

· 애완 동물 사료

· 해양 연체동물(굴 및 달팽이 제외)

· 상업적으로 준비되고 포장된 동물 및 인체 치료용 뉴질랜드의 녹색 입홍합 분말

· 상업적으로 제조되고 포장된 동물, 인체 및 화장품 원료 중 Neatsfoot oil, hyaluronic acid, spinosyn compounds, tallow derivatives and colloidal oatmeal

· 인증된 국가의 소, 양, 돼지 또는 염소 동물에서 추출한 천연 탄피

· 건조한 약용 버섯

✓ Boletus frondosus

✓ Cordyceps spp.

✓ Fomes fomentarius

✓ Ganoderma lucidum

✓ Grifola frondosa

✓ Hericium erinaceus

✓ Inonotus obliquus

✓ Ophiocordyceps sinensis

✓ Phellinus spp.

✓ Polyporus umbellatus

✓ Taiwanofungus camphoratus

· 미끄러운 느릅나무 껍질

· 포도 덩굴의 기사

· 천연 줄기에 인공 식물

· 가공되지 않은 면화

· 미처리 짚 제품

· 바나나 섬유 제품

· 밤나무 껍질이 있는 오크 배럴

2) 향후 수입허가 절차가 변경될 예정인 상품

- 아래의 상품에 대해 수입허가제도 변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수입허가 폐지 방향으로 법이 개정 될 예정임

· 토양 및 토양을 포함한 제품

· 물과 물을 포함한 제품

· 젤라틴

· 카제인 접착제 및 젤라틴 접착제

· 동물성 트로피, 인공물 및 수공예품

· 생가죽

· 중고 말 장비

· 수의학 치료제

· 동물용 화장품

· 아미노산

· 효소

· 말린 유제품

· 젖당 함유 수의학 제품

· 천연 향료

○ 수입허가 절차가 폐지 된 이후에도 식품수입업자는 호주 생물보안성 데이터베이스(BICON)에 규정된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출처 : 호주 농림수산부 고시 120-2017

3. 새로운 식품안전인증 시스템 실행 연기

○ 2018년 1월에 실행 예정이었던 새로운 식품안전인증 시스템인 HARPS(Harmonized Australian Retailer Produce Scheme)의 실행이 연기됨. 해당 인증제도는 과일 및 채소류를 슈퍼마켓 소매점에 판매하기 위해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음

○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과도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소규모의 농장 사업주들이 이 인증제도의 도입 연기를 주장해 왔음

○ 새로운 인증제도는 농장 근로자들의 입마개 착용을 위무화하고, 휴대용 사무용 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를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점심 식사로 가져가지 말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고 알려졌음. 일부 재배자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동 인증제도를 보이콧 할 것이라고 밝힘

○ 일부 농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HARPS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고 있음. 민간자율로 실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실행을 찬성하는 측은 실행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능률적인 감사 과정의 중요성이 인식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해당 인증제도는 호주 국내에서 재배, 제조, 포장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며, 전체 신선식품의 3%를 차지하는 수입 신선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음

○ 해외에서 수입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호주 농림수산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규정에 따라 철저히 검사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아시아 매미 나방 검역 강화

○ 아시아 매미나방(Asian Gypsy Moth, AGM)은 선박의 상부 구조물과 화물을 통해 옮겨질 수 있는 심각한 해충으로 극동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북부 지역 일부 항만에서 번식함

○ 호주 농림수산부는 아시아 매미 나방의 산란기에 맞춰 2018년 1월부터 호주에 도착한 선박에 대한 AGM 위험 관리를 시작했음. 이 활동은 2018년 5월 31일 종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조치에 따라 호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도착 전 신고 절차의 일환으로 MARS(Maritime Arrivals Reporting System)를 통해 AGM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함

○ 해상국가 코디네이션 센터(MNCC)는 제출된 질의 답변서를 기반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며, AGM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에 통보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호주 농림수산부는 AGM과 같은 생물 보안 분야의유해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충경보 팜플렛을 개발했으며, 동 부서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

* 출처 : 호주 농림수산부 고시 06-2018 아시아 매미나방 검역